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건지 30420-1696	(전화 : 731-6382)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 · 준영구. 10 . 5 (3) 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1605	
시행일자	'91. 10. 25		
보조기관	부 시 장 : 전결	협조기관	통 제
	주택국장	법무담당관 심사필	
	건축지도과장	회계심사계장	
기안책임자	건축계획계장 곽 석 안	(박찬석)	발 송 인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참 조	발신명의	교육계수 조사및추산 10월23일
제 목	지정제 건축선 변경 결정 고시		

(제1안) 내부결재

1.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구 관내 서소문동 47-2호 필지상에 있는 지정제 건축선에 대하여 건축법제30조제2항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등 지정제 건축선 변경 승인요청이 있어 동법제3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하고,

2. 관계부서에 동내용을 통보코져 합니다.

가. 고시문안 : 고시안(별첨)

나. 게재신문 : 일간신문 1개사 및 시보.

다. 게재일자 : 1991. 10.

라. 소요예산 : 3단 X 7CM X 31,000 X 1개지X1.1= 716,100원

마. 예산과목 : 건설사업비,주택사업,건축지도, 수용비및수수료.

바. 지출방법 : 고시후 청구에 의한 지출

첨부 : 1. 승인요청서 사본 1부

2. 건축위원회 의결서 사본 1부. 끝.

(제2안) 1043

수신 : 공보관

제목 : 고시문 일간신문 및 시보게재 의뢰

1. 중구 서소문동 47-2호 필지상의 지정재 건축선 변경 결정 고시안을 일간신문 및 시보에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건축법 제30조 3항

나. 게재문안 : 고시안(별첨)

다. 게재신문 : 일간신문 및 시보

라. 게재일자 : 1991. 10.

마. 소요예산 : 716,100원

바. 예산과목 : 건설사업비,주택사업,건축지도,수용비및 수수료

사. 지출방법 : 고시후 청구에 의한 지출

첨부 : 고시안 2부. 끝.

(제3안)

수신 : 중구청장

참조 :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제목 : 지정제 건축선 변경 결정 고시

1. 귀구 관내 서소문동 47-2호 필지상의 지정제 건축선을 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하였으니 업무처리에 참오없도록 할것.

첨부 : 고시안 사본 1부. 끝.

검열
10 25
통제관

구시장

고시 접수	1991.10.22.	제 303 호
담 당 자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1-312호

지정제 건축선 변경 결정

1. 서울특별시 지정제 건축선을 건축법 제30조(제1)2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3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와 (중)구청 도시정비과,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1. 10. 25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지정제 건축선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고
기 정	4.0M	29M	중구 서소문동 47-2	중구 서소문동 47-2	
변 경	4.0M	23M	중구 서소문동 47-2	중구 서소문동 47-2	

나.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 및 중구청 도시정비과,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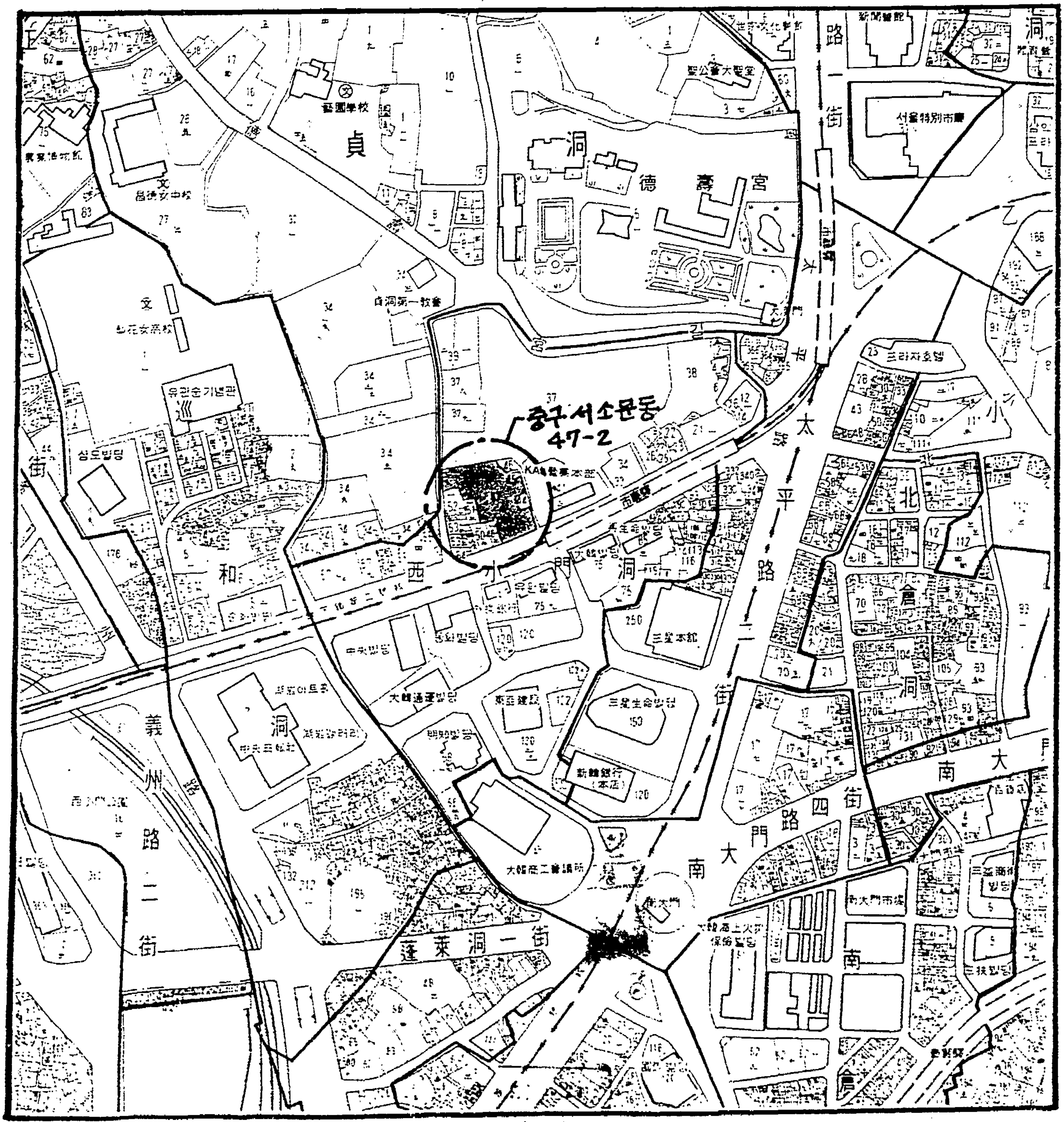

중구 서소문동
47-2
德壽宮
聖公會大聖堂
新聞會館
서울特別市廳
藝園學校
貞洞第一敎會
三星本館
三星生命빌딩
新韓銀行
(本店)
大韓商工會議所
南大門
南大門市場
蓬萊洞一街
中央빌딩
東亞建設

위 치 도

축척 1/5000